

산업간호사의 일차 의료 직무 범위에 관한 연구

김화중 RN, PhD¹⁾·고봉련RN, MPH²⁾·김순례RN, MPH³⁾·안민선RN⁴⁾
윤순녕RN, PhD⁵⁾·임옥순RN⁶⁾·임혜경RN⁷⁾·정혜선RN⁸⁾·조동란RN, MPH⁹⁾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직무가 명시되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산업보건분야에서도 간호사에게 일차보건의료를 요구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간호사는 산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물론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1992년 현재 2,213명의 산업간호사가 산업장에서 보건 관리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노동부, 1991). 그리고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 직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각 산업장 및 근로자의 특성에 맞도록 산업간호사 각자의 지식과 기술 범위에서 세부 직무를 연구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1991년 5월 노동부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일환으로 산업간호사의 직무를 개발하

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7월 한국산업안전공단 주최로 열린 직업병 예방 대책 세미나에서 산업장 보건관리자인 산업보건의, 산업위생사, 산업간호사의 직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견이 수렴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인 9월에는 노동부가 한국산업간호학회에게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 직무지침(안)을 연구개발하도록 의뢰하여 동년 10월에 산업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직무지침안을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같이 산업장 보건관리에 대한 토의가 산업보건계에 팽대되면서 1991년 12월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주최로 산업의학회, 산업위생학회, 산업간호학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장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각 학회별로 그들의 안을 제시하고 토론하였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의견의 개진되고,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안으로 수렴되지는 못하였다. 특히 산업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직무 중 일차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직무의 개발은 더욱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계속 연구 과제로 두고 현재에 이르렀다.

-
-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2) 한국산업간호학회 사무국장
 - 3) 가톨릭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4) 산업간호사회 사무국장
 - 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6) 산업간호사회 회장
 - 7) 산업간호사회 부회장
 - 8) 노동부 산업보건과 전문위원
 - 9)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 교육원 교수

이에 1992년 8월 한국산업간호학회는 그간의 많은 논의와 연구를 기초로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행위에 대한 세부직무를 전문가의 의견 일치 방법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제시된 일차의료행위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부직무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직무 범위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직무지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행위 세부직무범위를 산업간호사의 지식과 기술 수준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체적 목표를 갖는다.

첫째, 외상 및 혼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범위를 규명한다.

둘째,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범위를 제시한다.

세째, 상병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범위를 한정한다.

네째,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범위를 직업병 원인 분류에 근거하여 규명한다.

다섯째, 산업간호사의 의약품 투여범위를 한정한다.

II. 문헌고찰

1.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 행위

산업간호사의 업무 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 보면 산업간호사는 주로 응급처치와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 사실상의 일차진료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수란, 1974; 김순례 등, 1976; 박노예 등, 1980; 유승미, 1985; 정연강 등, 1987; 권영숙, 1987; 문정순 등, 1987; 김현숙, 1987; 전경자, 1988; 김순례 등, 1989).

산업간호사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강문제의 범위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 등(1980)의 연구에서는 소화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권(1987)의 연구에서는 소화불량, 두통, 외상, 근육통, 감기 등이 많았다.

의무실 이용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ICHPPC(Intern-

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Problems in Primary care)를 이용하여 분류한 전(1988)의 연구에서는 산업간호사가 다루고 있는 건강문제로 총 56개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20개의 건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급성상기도감염, 위십이장기능장애, 두통, 찰과상·수포, 단순요통, 급성편도선염, 열疮 및 개방성낭창, 염좌 및 과진장, 치통, 기타 손상 및 상해, 과민성대장증후군, 화상, 타박상, 봉와직염단독, 피부농양, 기타 꿀근육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고혈압, 월경곤란증, 두드러기, 현기증, 복통이었다. 이러한 건강문제에 대해 산업간호사는 주로 투약과 처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국적인 규모로 산업간호사의 업무를 분석한 김등(1989)의 연구에서는 총 46개 건강문제가 제시되었다.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건강문제로는 감기, 소화불량, 두통, 외상, 속쓰림, 기침, 목아픔, 근육통, 타박상, 결막염 등이 있었다.

한편, 미국의 산업간호사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건강문제의 범위에 대해서 Carol(1985)은 가병운 외상, 폴절, 화상, 감기, 두통 등을 제시하였다. Rogers 등(1992)은 산업간호사의 일차진료 영역을 일차예방, 일차진료, 응급간호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일차예방에서는 유방암검진, 약물검사, 뇌내장검진, 고지질혈증 검진, 고혈압 검진, 산전관리, 결핵검진 등을 포함하였고, 일차진료에서는 요통, 수포, 결막염, 반복성 손상장애, 피부염, 중이염, 두통, 간염, 바이러스감염, 인플루엔자, 정신장애, 인후염, 상기도감염을, 응급간호에서는 복부손상, 찰과상, 기도폐색, 절단, 동물손상, 천식발작, 급성요통, 화상, 심폐소생술, 타박상, 저혈당증, 고혈당증, 비출혈, 눈손상, 꿀절, 두부손상, 열손상, 기흉, 쇼크, 염좌 등을 포함하였다.

2. 보건진료원의 일차진료 직무지침

1980년에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근거로 보건진료원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간호사의 일차진료 직무가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회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발된 보건진료원의 일차진료를 위한 직무지침에 환자진료의 범위와 깊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보사부, 1990). 보건진료원을 위한 환자진료지침은 진료방침, 보건진료원이 행하는 진찰 및 검사기준, 환자이송의 범위, 보건진료원이 처치할 수 있는 통상적 질병의 종류

및 처치방법, 증상중심의 의사결정지침, 투약 및 처치방법, 약품사용과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진료원의 기본적인 진료방침은 합병증이 없는 복통, 기침, 발열, 피로, 설사 등을 동반한 증상 및 질환으로 규정된 약품 범위내에서의 치료 및 투약을 실시하여 투약기간은 1회에 3일간으로 하고, 7일 간에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는 의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지침에 따라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보건진료원은 6개월 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보건진료원이 주로 다루는 건강문제는 김(1987)의 연구에서 총 185개였고, 급성상기도감염, 기침, 위십이장기능장애, 급성폐도선염, 열차 및 개방성낭창, 접촉성피부염 및 기타 습진, 단순요통, 두통, 봉와직염, 단독, 농양, 치통 등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난 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와 미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산업간호사의 일차진료 직무 범위는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자문을 거쳐 각 건강문제별 진찰 및 검사기준, 투약 및 처치의 깊이, 의뢰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일차진료 직무에 대한 공식화된 표준지침인 보건진료원의 환자진료지침과 같은 수준의 산업간호사를 위한 일차진료직무지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기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비롯한 산업보건 관계법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보건 진료원 직무지침, 산업보건 관계 논문, 외국의 일차보건 의료 및 산업 일차보건 의료 관련 문헌 등이었다.

이들 자료를 1990년 9월 한국산업간호학회가 창립한 이래 연구 검토를 해 오다가 1992년 8월 13일 산업간호계의 전문가 12명이 모여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 행위에 대한 직무 범위를 도출하였다. 산업간호계의 전문가 12명은 산업간호를 연구, 강의하는 간호학 교수 5명,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의 산업간호 전문가 3명, 산업간호사 대표 4명이었다.

2. 연구 방법

산업간호 전문가로 참석한 12명의 토의자를 2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 별로 과제를 부여하였다. 집단 별 과제는 집단토의에 의해서 그 결과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유도된 결과는 3회의 전체 토의 형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여기에 토의자들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산업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일차의료 행위 범위를 하나하나 규명하고 제안하였다.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 행위 범위의 결정은 산업간호사의 구체적 직무한계를 개발하는데 기본 초석을 만든 셈이 된다. 직무 범위가 결정되면, 외국의 예와 우리나라 산업간호사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적 직무 한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쉬어질 것이다.

IV. 연구 결과

1. 산업간호사의 건강사정 직무 범위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 행위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이며 기초가 되는 직무가 “건강사정”이다. 이는 건강 문제를 가진 근로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과 같은 진찰과 검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업간호사의 건강사정 직무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 행위를 위한 건강사정 직무는 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 유해 요인별 자각 증상 확인의 4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 직무 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산업간호사가 해야 할 문진은 별도로 근로자의 건강 진단을 위한 “문진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진에는 작업력 조사, 과거 병력, 가족력, 주로 호소하는 증상, 현 질병 상태, 일반 신체 상태, 사회적 배경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간호사가 근로자의 일차의료를 위하여 실시해야 할 신체검사는 체격검사, 활력 증상 측정, 시력, 색신, 청력, 외이도와 고막 시진, 동공 반사검사, 눈동자의 움직임, 복부 촉진, 심장 및 폐부 청진, 건반사 등이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 신체검사표로 개발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임상 검사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피내 반응 검사의 4가지 종류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이들의 구

〈표 1〉 산업간호사의 건강사정 직무 범위

항 목	내 용
문 진	직업력조사(업종, 취급물질, 근속기간, 현부서, 타직종 경력), 과거력, 가족력, 주호소, 현 질병상태, 일반 신체상태, 사회력
신 체 검 사	체격검사(체중, 신장, 체형), 활력증상 측정, 시력, 색신, 청력, 외이도와 고막시진, 동공반사검사, 안구움직임, 복부촉진, 심장·폐·복부 청진, 전반사
혈액검사(해모글로빈, 혈색소, 혈액형, 혈당, SGOT /SGPT)	혈액검사(해모글로빈, 혈색소, 혈액형, 혈당, SGOT /SGPT)
임 상 검 사	소변검사(당, 단백, 임신반응검사)
유 해 요인별	대변검사(혈변검사)
자 각 증상 확인	피내반응검사(간디스토마, 투베르콜린반응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표13 참조

체적 내용은 〈표1〉과 같다. 물론 이 검사 내용은 검사실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이 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하며 계속 관리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유해 요인별 자각증상 확인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 100 조 〈별표13〉에 제시된 내용으로 한다.

2. 통상증상처치 직무

산업간호사가 산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접하게 된다. 근로자는 산업간호사에게 그들이 흔히 겪고 있는 증상을 호소하며 이의 해결을 기대한다. 근로자들이 주

로 호소하는 증상을 중심으로 산업간호사가 해야 할 처치는 〈표2〉와 같다. 물론 각 증상 별 처치의 깊이와 범위는 구체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산업간호사가 취급하게 되는 증상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화기계에서 비뇨생식계까지 7개의 계로 구분하고 각 계 별로 흔히 호소하는 증상의 내용을 나열한 결과 약 100여 종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 100여 종의 증상들은 국내 및 외국에서 산업 간호사가 산업장에서 흔히 당면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건 진료원을 위한 직무 지침에 수록된 것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 수준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로 모아진 것이다.

〈표 2〉 산업간호사의 통상증상처치 직무범위

항 목	내 용
소화기계	소화불량, 복통, 오심, 구토, 식욕부진, 황달, 변비, 체중감소 및 증가, 설사, 치질, 혹변, 항문소양증, 비만
근골격계	요통, 염좌, 과긴장, 목이 뻣뻣함, 견갑통, 사지통(관절통), 부위별 방사통, 경견완증후군
호흡기계	감기, 기침, 고열, 흉통, 호흡곤란, 과호흡, 임파선종양
순환기계	말초순환장애, 심계항진, 정맥류, 빈혈, 부정맥, 빈맥, 서맥
신경정신계	두통(편두통, 긴장성두통), 혈기증(어지러움), 피로감, 무력감, 경련, 안면창백, 마비, 우울, 불안, 부적응, 이상행동, 수면장애
피부감각계	머릿이, 기생충, 접촉성피부염, 땀띠, 구진(담마진), 무좀(백선) 음, 소양증, 두드러기, 피부농양, 동상(전신성, 국소성), 여드름, 수포, 이통, 청력저하, 귀소양감, 고막흰, 비분비물과다, 재채기, 이분비물과다, 코혈음, 인후통, 연하곤란, 인두이물감, 치통, 이명, 잇몸질환, 맥립증, 충혈, 안구소양증, 눈두덩 부종, 시력저하
비뇨생식계	부종, 혈뇨, 배뇨통, 외음부 소양감, 무뇨, 핍뇨, 빈뇨, 요실금, 생리통, 무월경, 불임증, 유방이물질, 유방통

3. 외상 및 응급처치 직무

산업 간호사가 처치해야 할 외상과 응급처치의 범위는 <표3>과 같다. 외상이나 응급처치의 항목을 외상, 화상, 중독, 끌절, 출혈, 속,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의 구

체적 내용을 산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면서 응급 처치를 요하는 내용으로 제한하여 제시하였다. 산업간호사의 대부분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외상 및 응급처치를 요하는 내용들은 기본 간호 교육과정에서 교육받아 지식과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표 3> 산업간호사의 외상 및 응급처치 직무범위

항 목	내 용
외 화	상 찰과상, 타박상, 열창 및 개방성낭창, 교상, 자상, 부위별 손상 눈 및 기도의 이물질 삽입 전기화상, 부위별화상, 화학물질 화상
중 독	약물, 농약, 중금속, 세균성, 일산화탄소 및 유독가스중독
끌 절	부위별 끌절, 급성영좌, 절단, 급성요동, 탈구
출 혈	개방성 출혈, 피하출혈, 비출혈, 각혈, 토혈
쇠 크	실신(뇌진탕, 뇌졸증, 편마비), 신장마비, 호흡부전, 혼수(간성, 당뇨성, 뇌성, 중독성), 호흡폐색, 열경련, 열피로
기 타	천식발작, 저혈당·고혈당 증상, 정신발작, 경련, 급성복통, 떨꾹질, 물에 빠짐

4. 상병 악화 방지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상병악화 방지의 직무를 산업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상병악화 방지를 요하는 건강문제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이

다. 이들 내용을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화기계에서부터 피부감각계까지 9개로 구분하고 각 계별 증상이나 질병을 정리한 결과 약 50여 종의 건강 문제가 상병악화 방지 직무에 포함됨을 본 연구진들이 알 수 있었다.

<표 4> 산업간호사의 상병악화 방지 직무범위

항 목	내 용
소 화 기 계	외염, 기능성위장장애, 소화성궤양, 간염, 간경화증, 과민성대장염, 담석증, 위절제술
순 환 기 계	고혈압, 심장질환(협심증, 갑염성심내막염, 울혈성심부전, 정액류)
호 흡 기 계	상기도감염, 폐결핵, 천식, 기관지염, 만성폐색성폐질환
근 꿀 격 계	관절염(외상성, 퇴행성, 홍농성, 결핵성, 류마チ스성), 끌절, 관절종양, 끌수염, 견갑통, 외상성 활액낭염, 주간관탈출증
내 분 비 계	당뇨병, 간상선기능항진증, 기능저하증
신 경 정 신 계	간질, 알콜중독, 만성약물중독
비 뇨 기 계	신장염, 요도감염, 매독, 임질
피 부 감 각 계	편도선염, 알러지성비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외이도염, 구씨관염, 비출혈, 인후염, 구내염, 설염, 결막염, 각막염, 습진, 대상포진, 접촉성피부염
기 타	각종 수술후 추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의 부위별 건강관리

5. 추후 관리 직무

산업간호사의 추후 관리 직무는 근로자의 일반 검진이나 특수 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직업병, 혹은 직업 관련성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장에서 발견되는 직업병의 유형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금속 및 중금속, 분진, 물

리적 인자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 유형 별로 추후관리를 받아야 할 직업병을 나열한 결과 20여종이 있다(표 5). 세계적으로 알려진 직업병의 종류에 비하여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산업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추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표 5〉 직업병의 추후관리 직무 범위

항 목	내 용
유기용제	직성업피부염, 유기용제중독
특정화학물질	특정화학물질중독, 직업성천식
금속 및 중금속	중금속중독
분진	진폐증
물리적 요인	감압증, 소음성난청, 레이노씨증후군, 직업성요통
	VDT증후군, 열중증, 산소결핍증, 방사성장애, 녹내장, 백내장
기타	사고로 인한 불구, 기타 직업성질환 등

6. 약품 투여 범위

산업장에서 산업간호사가 일차의료를 제공하면서 소요되는 약품의 종류를 외용약과 내복약으로 구분하고 각 종류 별 약품의 성질에 따라 30여 종으로 다시 분류한

후에, 30여 종의 분류를 근거로 각 약제별 구체적 약품들을 제시해 보면 〈표 6〉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장에서 산업간호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약 90여 종임을 알 수 있다.

〈표 6〉 산업간호사의 약품투여 범위

항 목	내 용	용
외 용 약	소독약 항히스타민제 안약 소염진통제 항생제연고 화상치료제 음치료연고 진균치료제	베타딘, 암모니아수, 봉산수, 알콜, 과산화수소, 요오드용액, 크레졸, 생리식염수 카라민로션, 아빌연고, 계관 바이진, 신도톱, 옥시마이신안연고, 테라코트릴눈·귀약, 캄비션안연고 안티플라민, 파스류, 맨소래담, 바이겔연고 젠타마이신연고, 캄비손연고, 후시딘 실바돈, 바셀린연고, 마데카솔, 베타딘연고 유락신 니조랄, 카네스텐, G-V
내 복 약	소화제 제산제 화성제양치료제 정장지사제 진토제 위기능조절제 변비완화제	웨스탈, 판크레온, 베스타제, 활명수, 위청수 노루모, 암포젤, 미란타, 탈시드 복합아루사루민, 씨메티딘, 파오티딘, 라니티딘 후라베린, 로페린, 비오티스, 뉴스파타린 트리민 메소롱, 모틸리움 돌코락스, 아락실

항	목	내	용
기 타	소염진통해열제	아세타아미노펜, 아스파린, 폰탈, 낙센, 펠덴, 부루펜, 트랑코팔	
	진정제	부스코판	
	진해거담제	코프시럽, 지미콜, 비졸본, 리나치올, 용각산	
	항히스타민제	아빌, 페니라민, 프라콘, 타베질, 액티피드, 콘택	
	기관지확장제	알루펜트, 베로텍, 아스토신	
	종합감기약	화이투벤, 판콜	
	항생제	테트라 사이클린, 에리스로 마이신, 런코신, 앰피실린, 아목사실린	
	소염제	키모탐, 바리다제	
	설파제		
	비타민제	아스코르빈산, 지아민	
구충제			
구강치료제			
정체식염			

V.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산업간호사들이 산업보건관리자로서 수행해야 할 일의료행위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①외상 및 혼화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②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 처치 ③상병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④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⑤의약품의 투여 등이다. 이들의 직무에 대한 범위와 깊이가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산업간호사의 산업장 보건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의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질적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행위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가 된다. 그러나 현재 산업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범위와 깊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산업간호분야의 교육자, 실무자 등이 모여 산업 간호 직무개발 연찬회를 통하여 각 직무별 범위를 제시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들 내용은 ①산업 간호사의 건강사정 직무 ②통상 증상 처치 직무 범위 ③외상 및 응급 처치 직무 범위 ④상병 악화 방지 직무 범위 ⑤직업병의 추후관리 직무 범위 ⑥약품 투약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범위를 근거로 각 범위별 깊이를 구체적으로 개발하여야 산업간호사들의 직무범위와 깊이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산업간호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직무 범위를 기초로 구체적 직무 범위에 따른 깊이를 개발하기 바란다. 이는 곧 산업장의 일차보건의료의 기반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지름길이 될 것이다.

- Carol AS. (1985). Nursing role in occupational health: Community health nursing, I. A. Davis Company.
- Rogers B, Mastrianni K, Randolph S. (1992). Occupational health nursing guidelines for primary clinical conditions, OEM Press.
- 권영숙 (1987). 인천시 산업간호사의 배치현황 및 산업간호제공실태에 관한 연구, 인천간호보건논문집, 5.
- 김순례, 문정순, 한상임. (1976). 보건관리요원실태조사, 중앙의학, 31(3).
- 김순례, 이지현외. (1989). 우리나라 산업간호사의 인력분포와 산업간호 제공실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창간호.
- 김철준. 일부지역 보건 진료원의 진료내용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2(1).
- 김현숙. (1987). 일개 조제업체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의무실 이용실태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동부. (199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노동부. (1992). 직업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 문정순, 김순례. (1987). 산업체 근무 건강관리 보건담당자의 근무실태조사, 최신의학, 30(2).
- 박노예, 김태숙. (1980). 서울시내 산업장 보건관리 현

황 및 보건간호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국립
보건원보, 17.

- 보사부. (1990). 환자진료지침·보건진료원용-.
- 엄수란. (1974). 일부 산업장 보건간호원의 근무활동실태에 관한 조사—서울, 부산, 대구, 일부 산업체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잡지, 11(2).
- 유승미. (1985). 산업장 근무 간호원의 기능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자. (1988). 일부 산업간호사의 근로자 건강문제관리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강, 권혜진, 조동란. (1987). 서울시 산업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26(5).

-논문초록-

산업간호사의 일차 의료 직무
범위에 관한 연구

김화중¹⁾ 고봉련²⁾ 김순례³⁾ 안민선⁴⁾ 윤순녕⁵⁾
임옥순⁶⁾ 임혜경⁷⁾ 정혜선⁸⁾ 조동란⁹⁾

본 연구는 1990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 새로이 명시된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 직무의 범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산업간호사의 직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노동부가 1991년 5월 직업병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중 하나로 산업간호사의 직무 개발 계획을 포함시킨 이후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한국산업간호학회에서는 1992년 8월에 그간의 많은 논의와 연구를 기초로 하여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행위에 대한 세부직무를 전문가의 의견 일치 방법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찬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기존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된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직무 범위를 ①산업 간호사의 건강사정 직무범위 ②통상 증상 처치 직무 범위 ③외상 및 응급 처치 직무 범위 ④상병 악화 방지 직무 범위 ⑤직업병의 추후관리 직무 범위 ⑥약품 투약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범위를 근거로 각 범위 별 깊이를 구체적으로 개발하여야 산업간호사들의 직무범위와 깊이가 결정된다. 앞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직무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 직무 범위에 따른 깊이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2) 한국산업간호학회 사무국장
3) 가톨릭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4) 산업간호사회 사무국장
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6) 산업간호사회 회장
7) 산업간호사회 부회장
8) 노동부 산업보건과 전문위원
9)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 교육원 교수